항공산업분야의 외국인투자유치
- 초경량비행기제조 투자유치사례를 중심으로 -

김인식 *

목 차

I. 서론
II. 세계의 해외직접투자 (FDI) 동향
III.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환경
IV. 항공산업분야의 외국인투자
V. 초경량비행기제조 투자유치사례
VI. 결어

I. 서 론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는 80년대 이후 다국적기업들의 글러벌 경영전략에 따라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적 기업의 생산 및 경영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97년말에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경제구조개선을 위하여 과감한 시장개방과 인센티브 공여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유치하고 있다. 풍전등화와 같던 외환위기를 극복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외채를 상환하며 IMF체제로부터 조기 졸업하게 된 것은 수출과 함께 외국인투자유치의 활성화에 힘입은 바 크다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투자전략팀장

① 이자.원리금 상환부담없는 외자도입으로 안정적인 외자확보와 ② 외국기업의 신설 및 기존기업의 생산력 향상으로 생산 및 고용 증가 ③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기술 및 경영.마케팅 기법습득 ④ 외국기업 참여로 우리 기업의 투명성 제고 ⑤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효과를 기할 수 있다. IT분야와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진출은 괄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산업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대규모 R&D가 필요한 분야로서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투자유치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 II 장에서는 90년대이래 증가 일로에 있는 세계의 FDI 동향을, 제 III 장에서는

우리 나라 외국인투자환경, 제 IV 장에서는 항공산업분야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관련 제도에 관해 고찰한 다음 제 V 장에서 최근 투자유치사례를 소개하는 식으로 본 논고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II. 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 (FDI) 동향과 전망

가. 최근 동향

세계 해외직접투자(FDI)는 국경간 M&A 급증에 힘입어 매년 기록적으로 신장하여 '9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억대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에도 신규 FDI 규모가 전년대비 18%가 증가하는 1조2710억불에 달해 전년의 증가세를 지속한 바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계 FDI 경향이 종전의 대개도국 제조업 신규투자(Greenfield Investment)에서 최근에는 다국적기업간 대규모 M&A가 주도함에 따라 선진국에 대한 FDI 유입액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FDI중 선진국대 개도국의 비율이 '96년 6 : 4 정도에서 2000년에는 8 : 2로 선진국간의 비중이 확

< 표 1>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US$십억)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전세계	385	478	693	1,075	1,271
선진국	220(57.1)	271(56.8)	483(69.3)	830(77.2)	1,005(79.1)
개도국	152(39.6)	187(39.20	188(27.2)	222(20.7)	240(18.9)
기 타	13(3.3)	19(4.0)	21(3.0)	23(2.2)	25(2.0)

주 : ( )안은 전세계 FDI중 비중.
자료 : UNCTAD, FDI/TNC database

< 표 2> 주요 경제권 성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1999	2000	2001 전망		2002전망
			2001. 10	2001.5	
세계경제	3.5	4.8	4.2	2.5	3.9
미국	4.2	5.0	3.2	1.5 (1.25-2.0)	(3.0-3./25)
EU	2.6	3.4	3.4	2.4	2.8
일본	0.8	1.7	1.8	0.6	1.5
중국	7.1	8.0	7.3	7.0	7.1
아시아개도국	6.1	6.9	6.1	5.9	6.3

자료 : IMF (2001), *World Economic Outlook*

< 표 3> 2001~2005 년간 세계 FDI 전망

(단위: US$십억)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세계	771	846	897	940	986
선진국	554.4 (71.9)	606.3 (71.7)	640.6 (71.4)	668 (71.1)	700.8 (71.0)
개도국	216.4 (23.1)	239.4 (28.3)	256.6 (28.6)	271.6 (28.9)	285.6 (29.0)

주 : ( )안은 전세계 FDI중 비중.
자료 : EIU (2001), *World Investment Prospects*

대된 바, 미국과 EU의 활발한 국경간 M&A가 지난해 세계 FDI 증가의 견인차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99년 기준 국가별로는 미국이 FDI 유입액 2,755억불로 전년에 이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영국 832억불, 중국 404억불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나. 향후 세계 FDI 전망

미국, 일본, EU 등 주요 투자국의 경기침체에 따라 세계 FDI의 여력은 감소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이후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 경기 둔화, 일본 경제침체 장기화, 유럽경제의 하향국면 돌입에 따라 세계 FDI 주요국의 투자여력은 괄목하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국경간 대형 M&A의 감소가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세계투자 증가를 주도했던 유럽의 통신사업자간 대형 M&A가 이미 완료되고 세계 철강·자동차산업 등 주요산업의 구조조정 진척에 따라 M&A 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2001년에는 전세계적으로 10년래 지속적으로 증가된 FDI가 최초로 감소될 전망이다. 영국의 경제분석전문기관 EIU는 근간 'World Investment Prospects'(세계투자전망)에서 2001년도 세계 FDI 규모를 전년대비 32.3% 감소한 7,710억불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세계 FDI의 GDP 비중도 2000년 3.6%에서 2001년 2.3%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위축된 세계 FDI는 2002년 이후 점차 회복이 기대되나,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III.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환경

가.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우리 나라에 본격적으로 FDI 유치된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이다. 1998년 이후 2001년 상반기 기간 중 FDI유치실적은 신고기준으로 486억불에 달하는데 이는 외자도입이 시작된 1962년부터 1997년까지의 36년간 유치규모인 246억불의 1.9배에 해당한다.

최근 선진국 경기의 둔화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외국인투자의 움직임은 다소 둔화 내지 관망세로 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1년도 상반기 총 외국인투자금액은 67억불로서 지난해 동기 대비 16.8% 증가했으나 하반기

< 표 4> 외국인 투자신고 현황

(단위: 백만불, %)

구 분	'62~'97	'98	'99	'00	'01.1~6	누계
총투자	24,645	8,853 (27.0)	15,542 (75.6)	15,690 (1.0)	6,700 (16.8)	71,430

주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자료 : 산업자원부 투자통계

< 표 5> 지역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백만불)

연월 국가	2000. 1~6 금액(비중)	2001. 1~6 금액(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EU	822(14.4)	1,707(25.5)	107.7
미 국	1,039(18.1)	765(11.4)	△26.4
일 본	1,029(17.9)	395(5.9)	△61.6

자료: 산업자원부 투자통계

접어들면서 다소 주춤거리고 있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EU, 미국, 일본 순으로 EU로부터 FDI유치실적은 전년대비 107.1% 증가한데 반해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26.4% 감소되었으며 일본으로부터는 61.6% 대폭 감소한 바 있다. 산업별로는 전년동기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43.7%에서 26.7%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이 56.2%에서 73.2%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나. 외국인투자 주요정책 및 제도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본법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인투자에 관한 조세감면 규정'(재경부고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자부고시), '조세법령 제한법령'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의 성격은 과거 '규제·관리' 위주에서 '촉진.지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되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인.허가제도의 간소화로 신속한 투자절차대행, 투자유치 One-Stop서비스 창구설치(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조세지원확대, 각종보조금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운영,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범주에는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및 외국법인이 포함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영주하고 있는 해외교포는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시킨 반면 국내에 준영구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화교의 투자는 외국인투자에서 배제하였다.

외국인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해 출자하는 목적물은 ①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외화도입)과 ② 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 산업시설

<표 6> M&A (구주취득)의 유형

o Mergers : 합병 –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단일기업으로 통합
o Acquisitions : 인수 - 다른기업의 주식/자산을 취득하여 당해기업의 경영권 취득
o P&A(Purchase & Assumption) : 선별인수 - 부실채권등을 제외하고 우량자산 등을 선별 인수후 매각기업 청산(예 : 부실은행 퇴출정리)
o Big Deal : 포괄양수도 - 기업간 생산라인등을 상호교환(예 : 재벌기업간 업종 전문화)
o Small Deal : 개별양수도 - 사업부의 일부자산을 개별계약으로 취득(BASF사의 대상그룹 라이신 사업부분 매입)

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부속품 ③ 외투법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 ④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⑤ 외국인의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의 청산에 따른 잔여 재산 ⑥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의 차관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외국인투자금액은 건당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금액의 상한은 없으며 외국인 투자비율은 원칙적으로 10%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주취득(Acquisition of newly issued shares): 전통형 직접투자
신설기업이 발행 또는 기존기업이 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 취득

(2) 구주취득 (Acquisition of outstanding shares): M&A형 직접투자
국내기업이 기 발행하여 장내 및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일정부분 이상을 취득하여 당해 기업 경영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

(3) 장기차관(Long-term loan)
해외 모기업 및 당해 모기업과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5년이상 장기 대부

다. 외국인투자대상업종

최근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업종 개방추진으로 우리나라의 투자자유화율은 99.5%로서 OECD선진국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121개 업종중 외투법 제4조에 의한 63개 제외 또는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외국인투자 대상업종이 되고 있다. 외국인투자 제외사유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유해한 경우, 대한민국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이며 국영우편업, 중앙은행, 입법기관, 중앙최고 집행기관 등의 업무도 제외업종에 포함된다.

대상업종 중 법 제 4조에 의거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분야는 라디오 방송업과 텔레비전 방송업 2개분야이며, 허용기준 충족시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부분제한업종에는 핵연료가공업, 내항여객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등 26개 업종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국가안보 유지 등을 위하여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업종들이다. 항공산업과 관련해서는 정기항공운수업과 부정기항공운송업이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되는 부분제한업종에 해당된다.

라. 외국인투자 촉진정책

1) 조세 인센티브

일반적으로 국경간 투자(cross-border investment)는 자본이동에 따른 위험부담

<표 7> 변동전후의 세제비교

종 전	현 행
<국세>: 법인세 소득세, 배당소득세 o 고도기술수반사업 : 8년간 감면 - 5년간: 100% - 그후 3년간 : 50% o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 - 3년간: 100% - 그후 2년간 : 50%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o 8년간 감면 - 5년간: 100% - 그후 3년간: 50%	<국세>: 법인세 소득세, 배당소득세 o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입주사업, 수출자유지역(마산 익산)입주사업: 10년간감면 - 7년간: 100% - 그후 3년간: 50%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등록세가 추가 o 최소 감면기간 : 8년 - 5년간: 100% - 그후 3년간: 50% o 지자체별로 감면기간, 감면율 확대 - 8~15년의 범위내에서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현재 각시 도에서 조례제정 추진중임

<그림 1> 조세감면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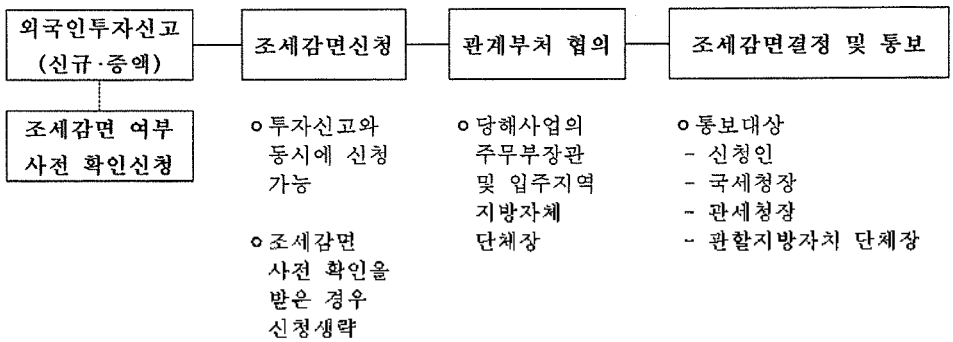

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불리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이러한 추가적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로서 외국투자가가 투자최적지를 선택함에 있어 조세감면 수준은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한다. 우리 나라는 외투법을 통해 조세감면대상 확대와 감면기간 연장, 감면대상 세목추가 등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조세감면 대상이 종전 256개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에서 현행 435개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과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7년간 100%, 추가 3년간은 50% 감면된다. 사업이 개시된 후 5년이 경과토록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해부터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 감면된다. 또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최초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 감면된다.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경우에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100%, 그후 3년간 50%의 감면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감면을 위해서는 투자신고 이전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 확인을 받은 때에도 외국인투자 신고후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관은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이며 외국인투자신고 수리기관인 외국환은행 및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종합행정지원실에 투자신고서와 조세감면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재정경제부 장관은 당해사업의 주무부처 장관과 신청사업의 조세감면대상 여부에 관한 협의를 토대로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국세청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의 결정 내용을 통보토록 되어있다.

2)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국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0년 내로 확대되었으며, 기간 만료시 50년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다. 국유재산의 감면대상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및 외국인투자지역 내 국가소유토지에 해당되며 감면율은 100%, 75%, 50%로 감면대상과 투자금액,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은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국공유재산은 조세감면대상 사업이 아닐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 및 임대가 가능하다. 토지 등의 매각에 있어 매입대금의 일시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국유재산은 20년 이내 분할 납부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3) 투자행정지원

외국인투자가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간편한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타(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 KISC)를 1998년 7월 설립하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는 투자상담단계부터 행정지원단계, 사후지원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걸쳐 초기 투자상담부터 조세 및 관세 감면절차, 법인설립절차 등 전문분야 상담, 공장부지 선정 및 매입을 위한 현장 지원, 인허가 절차의 직접 및 일

괄대행처리, 투자자의 국내정착을 위한 생활여건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외국인지원센타에서는 투자포탈사이트로서 Cyber KISC (www.kisc.org.kr)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 투자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상의 애로점에 대하여 고충을 청취하여 문제 해결을 지행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사무소를 KOTRA 내에 두고 있다. 현재 옴부즈만 사무소에는 건축, 세무, 노무, 통관 및 기타 일상생활 분야 등의 고충처리 전문요원(Home Doctor)을 구성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IV. 항공산업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가. 항공산업 관련 투자유치현황

우리 나라 항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항공기와 관련된 외국인투자기업은 7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항공기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4개뿐이다. 투자금액 면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현대우주항공의 경우 투자금액이 3,000만 달러 수준

<그림 2> 서비스 체제 및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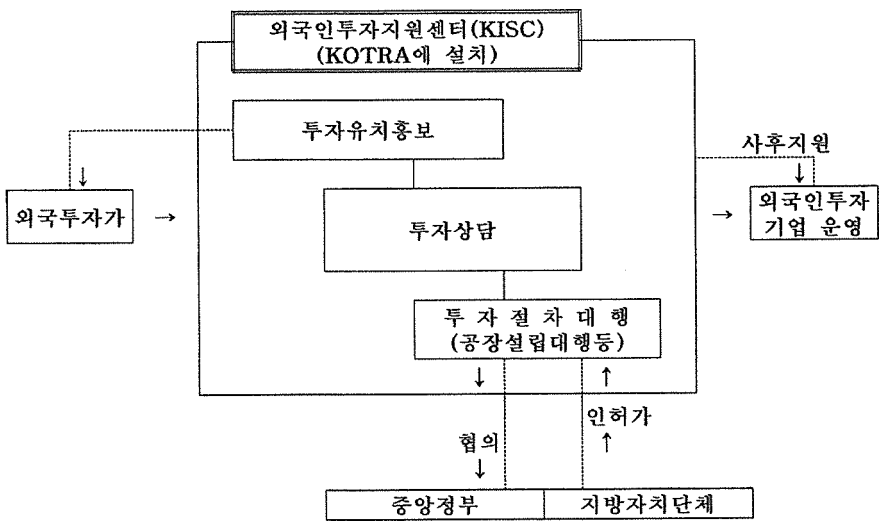

1) 장윤종-전주성(2000), pp. 231-233참조

<표 8> 항공산업 관련 투자유치

(단위 : 천달러, %, 신고기준)

투자연도	회사명	업종	사업명	투자액	투자비율	투자국	제 1 투자자
'91	미 강	전기 및 전자	항공조종사용 장비 및 항법통신장비제조	5,928	19	미 국	ALKOR INCORPORATED
'93	코아콤파지트	운송용기기	항공기부품 자전차 및 부품제조	315	60	미 국	LEE GUY HWANG
'94	휀리스코리아 (주)	기 타 서비스	선박 및 항공기 중개업	870	100	노르웨이	FEARNLEYS A/S
'95	한국삼광무역 (주)	기 계	인쇄기계항공기부품 농기계제조	96	100	일 본	SANKO TRADING CO.LTD.
'96	현대우주항공 (주)	기 계	항공기부품 및 보조장치제조업	33,293	38	아일랜드	AMALGAMATED TECHNOLOGIES
'97	썬이스트	무역업	선박 및 항공기 중개업, 종합무역등	50	33	러시아	LI GUY MOK
'99	익산보쉬항공 (주)	기 타 서비스	무인항공기제조 및 광고대행업	600	40	미 국	BOSCH AEROSPACCEINC

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극히 미미한 액수에 지나지 않고 있다.[1]

항공산업분야의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은 전무한 실정이다. 항공산업은 세계적으로 과점적 성격을 띠고 있는 관계로 이들의 국내진출은 수요의 확보와 기술력의 습득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세계의 항공산업은 글로벌 기업인 미국의 보잉, 록히드, 유나이티드 테크노로지, 레이테온, 어라이드 시그널, 테스트론, 노스롭 그루만 등과 영국의 BAe, 프랑스의 아에로스파시알,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등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우리 나라 기업들이 이들의 하청생산을 하고 있지만 2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이들의 연간 매출과 비교해볼 때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항공기제조 관련산업은 국내적으로 기술력의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하청생산의 경우에도 수출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외국인투자 측면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비롯하여 관련분야의 외국투자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빅딜에 따라 신설된 통합법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 9> 항공 수송분야의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산업

가. 고도기술수반사업
□ 항공기 및 동 부품 제작기술, 수리 및 개조기술
o 항공기 기체 및 동 부품의 설계, 시험평가, 제작기술
o 항공기용 엔진 및 동 부품의 설계, 제작기술
o 항공기용 전자부품 설계 및 제작기술
o 항공기용 시험장비 및 치공구 관련기술
□ 우주비행체 및 동 부품 제작기술
o 우주비행체 및 동 부품의 설계, 시험평가, 제작기술
o 우주비행체용 소재의 성형 및 가공기술
o 우주비행체용 시험장비 및 치공구 관련기술
나. 산업지원서비스업
□ 항공기의 설계, 시험평가 및 수리 개조(overhaul)기술
o 항공기 기체 및 동 부품(랜딩기어 포함)의 설계, 시험평가, 수리 개조기술
o 항공기용 엔진 및 동 부품의 설계, 시험평가, 수리 개조기술
o 항공기용 기계 전기 전자부품의 설계 시험평가, 수리 개조기술
o 항공기용 시험장비 및 치공구의 설계 시험평가, 수리 개조기술
□ 우주비행체의 설계, 시험평가, 수리 개조기술
o 우주비행체 및 동 부품의 설계, 시험평가, 수리 개조기술
o 우주비행체 시험장비 및 치공구의 설계, 시험평가, 수리 개조기술

별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동인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국의 이해와 기술력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투자기업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으면 투자유치 부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투자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면서 국내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통의 이해를 가지는 분야를 찾는 것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우리 항공산업의 시급한 과제이다.

나. 항공산업분야의 조세감면대상 업종

앞장에서 기술한 바 있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조세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 (당해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나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 또는 당해 서비스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술

V. 초경량항공기제조 투자유치사례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시장확보 및 확대, 생산 효율성 증대, 생산자원의 확보, 기술과 같은 전략적 자산의 확보를 위해 FDI를 추진하며 투자동기에 따라 투자결정 요인이 상이하다. 시장확보 및 확대의 경우에는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의 시장규모와 성장성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생산효율성 증대를 위한 해외투자의 경우에는 노동비용, 생산성, 노사안정 등이 투자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생산자원확보의 경우에는 자연자원이, 전략적 자산확보의 경우에는 기술력 및 R&D가 투자결정의 주요요인이 된다.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 진출하는 주요 동기는 수익성, 한국내 시장점유율 확보, 합작을 통한 빠른 시장진입 등의 요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시장확보 및 확대, 효율성 증대형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매력도로서 ① 아시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나라 중의 하나 ② 비교적 양호한 내수시장 보유 및 시장의 역동성 ③ IT 등 비교적 잘 발달된 인프라 보유 ④ 잘 교육받고 국제화된 신세대층의 증가 ⑤ 경제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위기를 극복한 저력있는 국가 등을 꼽고 있다.

최근 KOTRA 외국인지원센타(KISC)의 지원 하에 진행 중에 있는 초경량항공기 제조 합작투자 역시 상기와 같은 요인과 배경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외국투자가는 포르투갈에 소재한 Motoravia Engenharia Aeronautica S.A.(대표 Mr. Joao N.S. Folgado)로서 주요 생산품은 레저, 농업, 산림경비, 훈련용 등으로 폭넓게 사용 가능한 경비용기 제조업체이다. 한국 측 합작파트너는 (주)성준에지니어링(대표 곽 승렬)로서 초경량비행기 설계제작 및 교육훈련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합작 대상 품목은 다목적 초경량비행기(Ultra Light Plane) 및 엔진, 프로펠러, 시뮬레이션 설계와 제작이다.

설립되는 합작법인은 총자본금 51.5억원으로 외국투자금액은 320만불로서 30%의 지분을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한다. 충북 제천시에 공장을 설립하는 동 합작사의 합작조건은 포르투갈 업체가 기술과 설비를 제공하고 공장 및 인력, 경영은 한국 측 파트너가 담당토록 했다. 합작투자 상담 초기에는 포르투갈 파트너는 기술 및 설비, 검사 장비 등의 자본재에 대한 자체평가액 6백만불을 투자액으로 제시하였으나 한국 측 파트너와의 협상과정에서 재평가액 320만불을 지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생산규모는 1차년도 연간 경비행기 생산량 100대를 기준으로 시작하며 2차년도에는 200대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다.

투자유치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otoravia 사는 85년부터 캐나다에서 다목적 경비행기를 설계 생산해오다가 지난 97년에 EU 시장을 겨냥하여 포르투갈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폴르투갈에서의 생산은 전문인력의 부족과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KOTRA의 해외무역관을 통해 한국의 파트너 물색을 요청해왔다. KOTRA에 있는 외국인지원센타에서는 Motoravia사의 경비행기 엔진은 불란서, 독일, 이태리 등 수개국만이 생산기술을 보유한 고도기술제품으로서 국내유치 성사시 국내 관련 산업발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역점 추진하였다. 양 사의 대표가 수차에 걸쳐 상대 지역을 방문하여 합작조건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Motoravia사의 설비 및 기술에 대한 자본재투자액 평가와 (주)성준 측의 기술료 선수금 지급조건 등이 합작투자 협상의 난제로 작용하였으나 양측의 끈질긴 교섭 끝에 조정되었다.

또한 (주)성준은 경비행기 활주로 건설을 포함한 적격지에 공장부지를 물색하여 확보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으나 해당 지자체의 지원으로 순조롭게 해결하게 되었다.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기업 등록 등의 절차는 물론 고도기술수반산업으로서 조세감면대상기업 지정도 KOTRA내의 외국인투자지원센타의 원스톱서비스를 받아 추진되었다.

양 사는 2001년 3월 31일 합작투자계약서를 서명한 데 이어 6월 15일 기술도입 계약서 및 자본재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합작법인인 (주)성준모토라비아의 신규공장설립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한국의 초경량비행기 산업수준은 키트 상태의 부속품 수입 후 단순 조립 생산하는 정도이므로 동 사의 경쟁력있는 엔진과 초경량비행기 완제품 제조는 관련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작조건으로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초경량비행기를 연간 100대 이상 유럽시장에 판매를 Motoravia사가 보장하는 것을 기술료잔금 지급조건으로 명시한 바 있어 유럽시장은 물론 일본. 중국. 아시아시장으로의 수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VI. 결　　어

외국인직접투자는 미시경제적으로는 기술, 경쟁, 전후방연계 등을 통해 생산성제고 효과를 가져오며 그 결과 수출증진과 투자촉진, 생산증대를 유발하며, 거시경제적으로는 외국자본 유입으로 투자자본이 형성되어 생산과 고용 증대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수출입 관련하여서는 수출증대와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와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투자환경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자유화 정책추진으로 제한업종개방, 외환, 토지, M&A, 금융부문의 자유화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제공 등으로 단기간에 대폭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치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 항공산업분야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세계적인 과점공급체제 등의 제한으로 외국인투자 역시 부진한 실정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Motoravia사와 (주)성준의 합작투자는 비록 초경량비행기 제조부문에서의 소규모 합작투자이지만 취약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 우리 나라 항공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소규모의 합작투자를 통해 선진기술의 도입과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1988), 『외국인직접투자 업무편람』
_____(2001), 「 외국인투자촉진법령집」
장윤종 · 전주성(2001), 『외국인투자의 일석오조 효과분석』, 산업연구원
_____(2000), 『글러벌 경제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 산업연구원
산업자원부 (2000), 『외국인투자기업현황』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01), *World Investment Prospects*